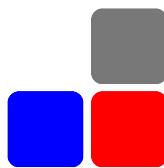




학생 중심, 현장 중심 교육



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확정·시행안

2021 시흥가온초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규정



시 흥 가 온 초 등 학 교
SIHEUNG GAON ELEMENTARY SCHOOL

우(14996) 경기도 시흥시 장현능곡로 33
교무실 ☎ 031)364-1700~2 행정실 ☎ 031)364-1770~3

<http://www.gaon.es.kr>

목차 : 2021 시흥가온초 학생생활교육위원회

CONTENTS

<제1장> 총칙	1
제1조(명칭)	1
제2조(목적)	1
제3조(적용근거)	1
제4조(선도원칙)	1
<제2장> 학생생활교육위원회	2
제5조(설치)	2
제6조(기능)	2
제7조(구성)	2
제8조(임기)	2
제9조(운영)	2
제10조(회의소집)	3
제11조(간사)	3
제12조(운영세칙)	3
<제3장> 학생의 선도	3
제13조(징계의 종류)	3
제14조(선도의 방법)	3
제①항(학교 내의 봉사)	3
제②항(사회봉사)	4
제③항(특별교육 이수)	4
제④항(출석정지)	4
제15조(선도기준 및 절차)	4
제16조(학교장의 재심 요구)	6
제17조(재심의 신청)	6
제18조(재심의 절차)	6
제19조(행정심판·행정소송)	7
<제4장>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 및 통지	7
제20조(사안설명)	7
제21조(심의절차 및 조치)	7
제22조(선도내용의 통지)	7
제23조(선도학생의 행사 및 고사응시)	7
제24조(결과처리·열람)	7
<제5장> 규정의 제·개정	8
제25조(개정절차)	8
부칙 (공포·시행)	8

▣ 한글파일 상태에서의 자료 찾기 방법 ▣

- 특정 검색어로 찾아보기 : Ctrl+F 누르기 → 찾기 창이 열리면
찾을 내용란에 검색어 입력 → 찾기 클릭
- 쪽수로 찾아보기 : Alt+G 누르기 → 쪽수 입력 → 가기 클릭

2021 시흥가온초등학교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규정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확정안(2021.04.15.)

범례

본문의 주황색 음영

↳ 처리 된 부분은 2021학년도 개정 된 사항

제정 : 2020.09.01.(신설학교 개교)
개정 확정·공포·시행 : 2021.04.15.

2021 시흥가온초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개정절차

- 순서❶ :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위원 구성(8명) : 2021.03.12. (학생대표3, 교직원2, 학부모2, 전문가1)
- 순서❷ : 학교교육공동체 의견수렴을 위한 개정안 발의 : 2021.03.11.~ 2021.03.29
- 순서❸ : 학생생활교육위원회규정개정안 전교직원 연수 : 2021.04.01.
- 순서❹ : 학생생활교육위원회규정개정안 학교운영위원회 안건상정 심의 : 2021.04.14
- 순서❺ : 학생생활교육위원회규정개정안 확정·공포·시행(학교홈페이지 탑재) : 2021.04.15.

경기도교육청 운영지침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, 각급학교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운영규정 개정

단위학교의 학교 학사 운영 일정 등을 고려하여 규정을 개정하며, **개정 전까지** 학생생활교육위원회 **개정 운영 지침과 상의·모순·저촉되는 사항에 관한 사항은 개정 지침을 우선 적용함.**

제1장 총칙

제1조(명칭) 이 규정은 ‘시흥가온초등학교 학생생활교육위원회규정’이라 한다.

제2조(목적) 이 규정은 본교 학생의 선도 사항을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학생이 올바른 행동과 바람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적용근거) 이 규정은 교육기본법 제12조(학습자), 초·중등교육법 제8조(학교규칙) 및 제18조(학생의 징계),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(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) 및 제31조(학생의 징계 등),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25조에 의거하여 학생선도(징계)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.

제4조(선도원칙) 선도의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.

- ① 학생의 선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.
- ② 학생의 선도는 문제 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예방지도에 중점을 둔다.
- ③ 학생의 선도는 학생의 잘못된 행위의 경증과 본인 및 타 학생의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참작하여 보편타당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.
- ④ 학생에게 선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고 가급적 징계의 종류는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제2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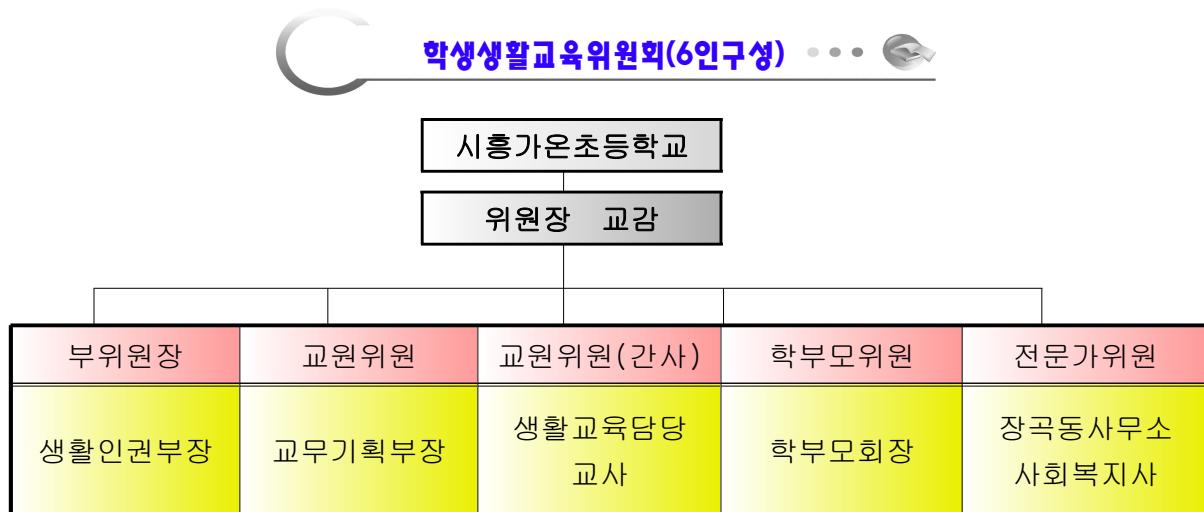
제5조(설치) 학생의 선도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장 소속으로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.

제6조(기능) 학생생활교육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학생선도에 관한 사항
2. 학생인권보호 및 학생선도에 관한 기본계획
3. 기타 학생 선도에 관한 사항

제7조(구성)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- ② 위원장은 교감이 되고, 부위원장은 학생생활교육을 담당하는 부장이 된다.
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외한 위원은 교사 중 **학교장이 임명**한다.
④ 학교장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, 학생징계 처분 및 그 밖의 선도 관리의 객관성·공정성·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활지도 관련 각계 전문가, 지역사회 인사, 보호자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



제8조(임기)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, 연임할 수 있다.

- ② 위원 중 교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9조(운영) ① 위원회 개최 시 이를 학생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. 단, 보호자의 동의가 있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문자 등으로 개최를 통지하고 통지 사실과 방법, 내용을 기록한다.

-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③ 위원회는 심의 전에 학생 및 그 보호자 의견을 충분히 진술할 수 있도록 기회와 방법을 마련하여 제공하여야 한다.
- ④ 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.

제10조(회의소집)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.

- 1.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
- 2. 담당부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
- 3.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
- 4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제11조(간사) ① 학교장은 학생생활지도를 담당하는 부서 소속 교원 중 1명을 위원회 간사로 지정한다.

- ② 간사는 심의 내용을 기록하고,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한다.

제12조(운영세칙) 이 규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3장 학생의 선도

제13조(징계의 종류)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.

- 1. 학교 내의 봉사
- 2. 사회봉사
- 3. 특별교육 이수
- 4. 1회 10일 이내,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

제14조(선도의 방법) 학생 선도는 다음 각 항에 따라 실시한다.

① 학교 내의 봉사

- 1. 1일 2시간 이내,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.(단, 학교 실정에 따라 총 10 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일수를 정하여 실시 할 수 있다.)
- 2. 수업 이외의 시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학교장의 판단으로 달리 실시할 수 있다.

3. 학생의 학교생활인권규정 위반 내용 및 정도에 부합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한다.

② 사회봉사

- 1일 5시간 이내,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.(단, 사회봉사 실시 기관의 운영 사정에 따라 총 25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일수를 정하여 실시 할 수 있다.)
- 학교 밖 행정 및 공공기관 등 봉사활동 인정기관에서 실시한다.
- 학생생활교육 담당 교사는 사전에 사회봉사 실시 기관의 방문 등을 통하여, 학생의 학교생활인권규정 위반 내용 및 정도에 부합하고, 반성 및 개선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되는지 등을 확인한다.

③ 특별교육 이수

- 총 3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일수를 정하여 실시하며, 경기도교육감 특별 교육이수기관 운영 지침의 교육 방법 등을 따르도록 한다.
- 교육감이 지정하거나 위탁한 기관에서 실시한다.
- 학생의 학교생활인권규정 위반 정도에 부합하고, 반성 및 개선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되는지 등을 확인한다.

④ 출석정지

- 1회 10일 이내, 연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부과한다.
- 출석정지 기간에도 학생의 교육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호자와 협의 하여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운영하도록 하며, 출석정지 기간에 교육감이 설치·운영하는 시설 및 교육방법을 이용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- 출석정지 기간에도 담임교사 등은 수시로 학생 및 보호자와 상담을 진행하여 학생의 반성 및 행동 개선을 지원한다.

제15조(선도기준 및 절차) ① 학생 선도 기준은 다음과 같다.

항	내 용	선도기준			
		학교내 봉사	사회 봉사	특별 교육 이수	출석 정지
1	미인정지각, 미인정조퇴, 미인정결석을 상습적으로 하는 학생	○	○	○	○
2	미인정결석이 (10)일 이상인 학생	○	○	○	○
3	합당한 이유 없이 수업이나 시험을 거부한 학생	○	○	○	○
4	고사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방조한 사실이 명백한 학생		○	○	○
5	시험문제를 절취한 학생 또는 대리시험에 관여한 학생		○	○	○
6	학교에서 음란물을 소지, 탐독, 배포한 학생	○	○	○	○
7	흡연 또는 음주를 상습적으로 한 학생	○	○	○	○
8	청소년 유해약물을 상습적으로 복용, 흡입한 학생	○	○	○	

항	내 용	선도기준			
		학교내 봉사	사회 봉사	특별 교육 이수	출석 정지
9	교내·외에서 남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를 한 학생	○	○	○	○
10	학생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상습적으로 출입한 학생	○	○	○	○
11	징계지도에 불응한 학생			○	○
12	징계 중 위 본조의 규정을 위반한 학생		○	○	○
13	도박을 한 학생	○	○	○	
14	공문서를 위조한 학생(진단서, 성적표 등)	○	○	○	
15	학교의 공공기물, 교내 차량을 고의로 훼손, 파손한 학생	○			
16	흉기를 휴대한 학생	○	○	○	○
17	그 밖에 법률에 위반하여 학교교육에 영향을 미친 학생	○	○	○	○

❖ 위의 내용에 없는 사항은 시흥가온초등학교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운영함.

② 학생 선도 절차는 다음과 같다.

순서	선도절차	추진업무
1	사안 발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현장 인지 교사가 1차 관찰, 간단한 문답 등으로 사실 확인 현장 인지 교사가 학생생활인권규정 위반의 경증 판단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: 현장 지도 또는 담임교사에게 인계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 : 학생생활교육 담당 부서에 인계
2	관찰 면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학생생활교육 담당 부서의 대상 학생에 대한 관찰 및 면담 학생생활교육 담당 부서의 학생생활인권규정 위반의 경증 판단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, 대상 학생이 충분히 반성하는 경우 : 지도·훈계로 종결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: 학생생활교육 담당 부서의 조사 실시
3	학생생활교육 담당부서 조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조사 방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대상 학생 및 참고인에 대한 면담 조사 실시 학생 자기변론서와 교사 사실 확인서 작성 요청 및 검토 조사 과정에서의 유의 사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대상 학생 및 그 보호자에 대한 내용·절차·권리 고지 강압 및 회유에 의한 조사 금지 2인 이상의 교사가 조사에 참여할 것을 권장 여러 학생이 관련된 사안의 경우 다른 장소에서 동시에 조사 실시 원칙 : 수업 이외의 시간을 활용하여 조사 실시 예외 : 수업 시간에 조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유와 수업 시간 조사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사실 확인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존재하고, 수업 시간 조사 실시에 대한 학교장의 결재 및 보충수업 실시가 이루어질 경우 예외적으로 수업 중 조사 실시 가능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대상 학생 관련 정보 누설 금지
4	위원회 회부판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학생생활교육 담당 부서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원회 회부 여부 판단
5	위원회 준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학생생활교육 담당 부서의 위원장(교감)에 대한 서면 보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사안 발생 개요, 위반 조한 및 정도 학생 자기변론서 및 교사 사실 확인서 등 그 밖의 학생 관련 참고 사항 위원장(교감)의 위원회 개최 일시 및 장소 결정 학생 및 그 보호자에 대한 서면 통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위원회 일시 및 장소 사안 처리 과정, 의견제출 기회,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 보호자가 참석할 수 없을 경우,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음을 고지 보호자가 타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고,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거나 이를 거부할 경우, '의견 없음'으로 간주됨을 고지

순서	선도절차	추진업무
6	위원회 개최·심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사안 설명 및 의견 진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간사의 사안 설명 및 위원회의 질의·응답 ▶ 담임 등 기타 참고 교사의 의견 청취 및 위원회의 질의·응답 ▶ 학생 및 그 보호자의 의견 진술 및 위원의 질의·응답 • 심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사안 설명, 의견 진술, 질의·응답 내용을 토대로 징계 여부 및 양정 심의 ▶ 그 밖의 학생 지도 방법 논의 ▶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 • 비밀유지 : 위원은 대상 학생에 관한 정보, 심의 내용 및 결과, 그 밖의 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에 관하여 누설 금지
7	심의결과 확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한 학교장 결재
8	학생 및 그 보호자에 대한 조치결과통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위반 내용 및 조항, 조치 내용, 결정 이유 • 조치 기간에 학생이 해야 할 사항 • 학생 및 그 보호자의 유의 사항, 보호자 협조 사항 등 • 재심의 신청, 재심청구, 행정심판, 행정소송 등 불복방법 및 청구기간
9	조치 이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조치 대상자, 조치 등 공고 금지

제16조(학교장의 재심의 요구) 학교장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.

제17조(재심의 신청) ① 학교 내 재심의 신청 기간은 징계 심의 결과에 따른 징계 조치결정에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징계 조치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.

② 학생 및 그 보호자는 조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학교에 재심의를 신청 할 수 있고, 이 경우 학교는 재심의 신청서 서식을 제공하고, 신청 사유 등을 분명히 기재 하도록 한다.

③ 학교장은 학생 및 그 보호자가 재심의를 신청하면, 학생에 대한 학생생활 교육위원회의 재심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징계 조치를 유보한다.

제18조(재심의 절차) ① 학교장은 제17조 신청에 대하여 2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.

② 재심의 절차 및 학교장 조치에 따른다.

1. 재심의 신청 인용 시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재심의를 실시한다.
2. 원 조치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한다.
3. 재심의 결과가 원 조치보다 가중될 수 없다.
4. 위원회 재심의 결과에 대한 학교장 결재
5. 학생 및 그 보호자에 대한 재심의 결과를 통지한다.
6. 조치를 이해한다.

제19조(행정심판·행정소송) ①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,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.

제4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 및 통지

제20조(사안설명)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선도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생활지도업무 담당부장, 해당 학년부장, 생활지도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.

②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개최, 의견진술 기회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한다.

③ 학생에게 징계를 가할 시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④ 해당 학생 및 그 보호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의견 진술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.

제21조(심의절차 및 조치)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.

1. 개회
 2. 심의과정 설명
 3. 담당부서·담당교사의 사안 설명 및 위원 질의·응답
 4. 담임·기타 참고인의 의견 청취 및 위원 질의·응답
 5. 학생 또는 보호자(법정대리인 선임 가능)의 의견 진술 및 위원 질의·응답
 6.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·의결
- ② 위원회 심의 결과는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·처리한다.

제22조(선도 내용의 통지) ① 학교장은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조치 결정 후 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조치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.

② 조치 결정 통지 시 학교 내 재심의 신청, 행정심판, 행정소송 등 불법 방법 및 청구 기간 등을 안내한다.

③ 학교장은 대상 학생, 징계 내용 및 결과 등을 공고해서는 아니 된다.

제23조(선도 학생의 행사 및 고사 응시) 선도 중의 학생이라도 시험에 응할 수 있고, 학교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. 단, 시험 및 행사 기간은 선도 기간에서 제외한다.

제24조(결과 처리·열람)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의록을 기록, 보관한다.

②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징계 조치를 받은 학생 및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·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위원 및 관련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다.

제5장 규정의 개정

제25조(개정절차) 이 규정의 개정에 관하여는 「학교생활인권규정 제·개정 절차」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.

부칙

제1조 이 규정은 2020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제1조 이 규정은 2021년 04월 15일부터 시행한다.